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 원 회
1	2002년도시정 업무계획청취 결의안	□ 제안이유 2002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민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발의 함 □ 주요골자 ○ 기 간 : 2002. 8. 27 ~ 8. 29 (3일간) ○ 장 소 : 각 상임위원회실 ○ 인사(간부소개) 및 총괄설명 • 본 청 : 국 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4급) • 구 청 : 구 청 장 ○ 업무계획 세부설명 • 본 청 : 담당관, 과장 • 구 청 : 과장 • 사업소 : 사업소장 (과장)	-	본회의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2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에서 지출한 예비비의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329,854천 원으로 수내동시립공설공원묘지이주보상비지급사업등 총 4건에 498,06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80,44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17,625천원은 불용액임 - 지출결정액 : 총 4건 498,067천원 - 지 출 액 : 총 4건 380,442천원 - 불 용 액 : 117,625천원	회 계 과	각상임
3	성남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추가설치에 따른 전문위원 및 사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성남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총 정 원 : 2,183명 → 2,186명(증3) · 집행기관의 정원 : 2,155명 → 2,156명(증1) · 의회사무국의 정원 : 28명 → 30명(증2)	총 무 과	자치행정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정원 조정내역 (단위:명)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총 정 원 (승인정원)</th><th>집행기관 의 정 원</th><th>의회사무국의 정 원</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계</td><td>증 3</td><td>증 1</td><td>증 2</td><td></td></tr> <tr> <td>조 정 내 역</td><td>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td><td>행정·건축 6급 1</td><td>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 행정·건축 6급 △ 1</td><td></td></tr> </tbody> </table> ※조례 제1825호(2002. 7. 31)에 의거 정원 조정된 의회사무국 6급(행정·건축)1명 집행기관으로 정원 재조정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사무10급→전산10급”으로 직렬조정	구 분	총 정 원 (승인정원)	집행기관 의 정 원	의회사무국의 정 원	비 고	계	증 3	증 1	증 2		조 정 내 역	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	행정·건축 6급 1	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 행정·건축 6급 △ 1			
구 분	총 정 원 (승인정원)	집행기관 의 정 원	의회사무국의 정 원	비 고															
계	증 3	증 1	증 2																
조 정 내 역	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	행정·건축 6급 1	행정·사회복지 5급 1 기능(사무)9급 1 기능(사무)10급1 행정·건축 6급 △ 1																
4	성남시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 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 개정(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 방지를 위하여 주민 자치센터 명칭은 “○○동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함(안 제4조) ·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우선적 으로 수행하도록 함 (안 제5조)	총 무 과	자치행정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5	성남시시설관리 공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에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용료· 수강료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0조)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5항) ·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를 신설함(안 제17조 제1항) ·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제6항) ·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안 제17조 제7항) ·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8조)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강화함(안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1항) ·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변경토록 함(부칙)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2002. 6. 19, 대통령령 제17629호) 각각 개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절차를 명확히 개정하여 이사장 선임절차를 공정하게 하고자 함.	기획예산과	자치행정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

연번	안 건 명	부 의 안 건 요 약	소 관 부 서	소 관 위원회
		□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함 (안 제16조제1항) ·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며, 공단의 임·직원,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함 (안 16조의 제3항 및 제4항) ·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9조제1항) ·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